

◇ 特輯-주류전문소매점제도 도입의 허와실 ② ◇

주류전문점 도입은 취소되어야 한다



김 경 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먼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주류전문점 제도도입이 중소유통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함은 물론, 우리 유통경제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주류전문점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주류전문점제도는 중소유통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중소형 수퍼마켓은 IMF환란위기와 NEW WTO시대에 대형할인점들의 횡포로 인해, 점

포당 평균 매출이 30%이상 감소하여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생존권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런데 주류전문점제도로 인해 수퍼마켓의 주류판매금지 또는 제한규정을 제정 할 경우, 매출감소와 이익감소로 인해 더 이상 점포운영은 불가능해진다.

본 협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소형 수퍼마켓의 78%가 “주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소매점 경영이 대단히 어렵다”고 대답하고 있다. 그중 52%는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반면 “별 지장이 없다”고 대답한 곳은 6%에 불과하였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주류판매업소는 총 51만 7천 4백 7십 8개로 나타났다.

이중 도매업은 2,787개, 일반음식점이 38만 5,167개, 일반소매점이 12만 9,391개, 기타 133개 등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류전문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소매점 12만 9천여 업체는 주류를 판매하지 못해 20%정도의 매출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12만 영세소매업체는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둘째, 주류전문점 도입은 제조업체간의 갈등을 야기시킨다.

소주업체는 지난해 주세율 인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한주류공업협회가 발표한 2000년 소비실태조사에 의하면 소주는 주세율이 34%에서 72%로 크게 뛰어 145% 나 감소했다. 그러나 100%에서 72%로 내린 양주는 36.8%나 증가했고, 맥주 역시 130%에서 115%로 내려 11.83%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다. 특히 숙성기간이 12년 이상인 고급 위스키의 경우는 58%의 신장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형국에 주류전문점의 도입은 소주제조업체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다. 서민적인 술 소주를 주류전문점에서만 팔 경우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경영상의 많은 애로점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주사의 경우는 그 어려움이 불을 보듯 분명해진다.

전통주와 탁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를 업체의 재무구조는 소주업체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지난해 주세율 조정을 앞두고 소주업체에서는 소주의 주세율만 올리는 것을 두고 '주류시장에서 소주업체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소주가격이 오르고 양주가격이 내릴 경우 판매율이 뒤바뀔 것이 뻔한 이치였다. 그리고 이는 곧 주류업체의 판도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소주업체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맥주와 양주 소비는 늘어났다. 특히 고급양주의 소비는 급증했다.

바꾸어 말하면 소주업체는 피해를, 양주와 맥주업체는 수혜를 받은 것이다.

셋째, 주류소비를 조장하는 곳은 수퍼마켓이 아니라, 고급술집이다.

주류전문점도입을 지지하는 자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주류판매, 주류소비의 천국"이라며 전국민이 퇴폐, 향락문화에 병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다음주가 이루어지는 곳을 바로 알면 주류전문점 도입의 부당성이 드러난다. 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의 경우, 음주장소를 묻는 질문에 "집에서 마시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일반음식점과 유통업소는 각각 78.9%, 8%를 차지해 전체의 86.9%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과다음주가 음주장소의 문제이지, 유통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좋은 반증이다. 고급 음식점과 룸살롱, 단란주점 등지에서의 음주문화가 문제지, 수퍼마켓에서 구입해 마시는 술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주류전문점 도입으로 탈세를 막겠다는 주장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40도 이상 고급 술을 취급하고 있는 곳에서 내놓은 술이 대부분 가정용이라는 것은 이미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넷째, 주류전문점제도는 청소년 음주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을 재대로 시행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음주를 조장하는 곳은 수퍼마켓 등 소매점포가 아니라, 호프집이나 치킨집, 소주방, 실내포장마차, 카페, 레스토랑 등이라는 사실이 여러 조사기관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서울시내 카페, 호프집, 소주방 등 조사대상 237곳 가운데 49.8%인

118곳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소의 27%만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실제로 시급한 것은 이들 유통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펴는 것이지, 수퍼마켓의 주류판매금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마치 수퍼마켓이 청소년보호법과 음주문제의 주범인냥 호도되고 범죄인 취급받는 현실에 분개할 수밖에 없으며, 수퍼마켓의 주류판매금지를 전제로 한 주류전문점제도는 대단히 불합리한 발상이다.

오히려 정부는 주류전문점 도입보다는 기존 주류면허운영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며, 기존 청소년보호법의 위상을 강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학교나 가정에서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한 예절이나 건강과 알콜의 관계, 알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과 예절 등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와 국민건강차원에서 사회운동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조사기관에 의하면 “음주예방교육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전체응답자 수의 86%나 차지한 것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다섯째, 중소형수퍼마켓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육성되어야 한다.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의 공업화와 산업화과정에서 유통구조의 개선과 물가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식생활개선과 국민건강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오늘날 외국 다국적 유통기업의 자본침식에 대항하여 국민경제를 사수하는 일선에서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다국적기업의 국내유통시장

진입과 대형할인점중심의 대형유통업체 횡포로 인해, 우리 영세 자영 수퍼마켓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의 중소유통인이 몰락되면서 지방경제도 무너지고 있으며,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소유통업체의 자구방안과 생존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주류전문점 같은 제도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중소상인의 자립과 생존권 수호의지를 북돋아 주고 지원해 주어도 모자랄 형국에 오히려 짓밟는 이같은 사태는 마땅히 규탄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중소형 수퍼마켓의 몰락을 방치 또는 조장해서는 안된다. 외환위기 이후, 쓰러져가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해야 하며,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은 필히 지켜져야 한다.

21세기는 지방화시대라고도 한다. 지방경제가 틀튼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중앙경제가 틀튼하길 기대하겠는가.

여섯째, 주류전문점 제도의 시행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류전문점제도의 시행이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주류전문점제도를 유일하게 시행하는 미국이 세계에서 음주소비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국가는 전통적으로 음주문화와 관습, 주류판매 유통구조가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영세한 반면, 의제면허를 통해 주류판매 허가제도 및 주세문화가 비교적 잘 정착된 나라이다.

그런데도 새로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

는 것은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며, 주류전문점 제도의 도입배경 이면에 어딘가 석연치 않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급 양주를 생산하는 외국의 다국적 주류회사들은 우리의 주류시장 석권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도 청소년보호라는 미명 하에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제일 먼저 경제적 이익을 볼 업체는 누구이고, 피해를 볼 업체

는 누구인가. 이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본과 조직을 갖춘 자들의 시장침투가 용이해져 고급 수입양주 업자의 배만 불리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국세수입과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은 허울뿐이고, 우리 주류시장을 통째로 내주는 격이라는 얘기다.

My definition of an educated man is the fellow
who knows the right thing to do at the time it has to be done....
You can be sincere and still be stupid

내가 생각하기로는 교육받은 사람이란 올바른 일을 적시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은 성실하지만 어리석을 수도 있다.

-Charles Kettering-